

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 번호	관련 1984
----------	------------

제안일자 : 2024년 8월 30일

제안자 : 도시안전건설위원장

1. 수정이유

- 도로표지의 정의에 「도로표지규칙」 제3조를 인용하는 것은 기능에 따른 도로표지만을 구분하고 안내방식에 따른 도로표지 구분이 배제되는 문제가 있어 도로표지의 정의 중 도로표지의 종류를 삭제하고 「도로표지규칙」 제2조제1호가 정하고 있는 정의만 인용하는 한편, 도로표지 정기점검 점검사항과 직접 관련성이 없는 인용조문을 삭제하고자 함.

2. 주요골자

- 도로표지의 정의 중 도로표지 종류를 삭제함(안 제3조제5호).
- 도로표지 정기 점검사항 인용조문 중 「도로표지규칙」 제4조와 제11조를 삭제함(안 제29조제2항제2호).

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3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5. “도로표지”란 도로이용자가 도로시설을 쉽게 이용하고, 원하는 목적지까지 쉽게 도착할 수 있도록 도로의 방향·노선·시설물 및 도로명의 정보를 안내하는 도로의 부속물을 말한다.

안 제29조제2항제2호 중 “제4조부터 제12조”를 “제5조부터 제10조, 제12조”로 한다.

수정안 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수 정 안
<p>제3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</p> <p>1. ~ 4. (생략)</p> <p>5. “도로표지”란 도로구조의 보존과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장소에 설치하는 것으로서 「도로표지규칙」 제2조에 따라 경계·이정·방향·노선 및 그 밖의 표지를 말한다.</p> <p>6. ~ 19. (생략)</p> <p>제29조(도로표지의 점검) ① (생략)</p> <p>② 관리자는 제1항에 따라 정기점검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.</p> <p>1. (생략)</p> <p>2. 점검사항 : 정기점검은 「도로표지규칙」 제3조부터 제13조까지의 사항을 점검한다.</p>	<p>제3조(정의) (현행과 같음)</p> <p>1. ~ 4. (현행과 같음)</p> <p>5. “도로표지”란 도로이용자가 도로시설을 쉽게 이용하고, 원하는 목적지까지 쉽게 도착할 수 있도록 도로의 방향·노선·시설물 및 도로명의 정보를 안내하는 도로의 부속물로서 「도로표지규칙」 제3조에 따라 경계·이정·방향·노선·안내 및 그 밖의 표지를 말한다.</p> <p>6. ~ 19.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29조(도로표지의 점검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1. (현행과 같음)</p> <p>2. ----- -----제4조부터 제12조----- -----.</p>	<p>제3조(정의) (개정안과 같음)</p> <p>1. ~ 4. (개정안과 같음)</p> <p>5. “도로표지”란 도로이용자가 도로시설을 쉽게 이용하고, 원하는 목적지까지 쉽게 도착할 수 있도록 도로의 방향·노선·시설물 및 도로명의 정보를 안내하는 도로의 부속물을 말한다.</p> <p>6. ~ 19. (개정안과 같음)</p> <p>제29조(도로표지의 점검) ① (개정안과 같음)</p> <p>② (개정안과 같음)</p> <p>1. (개정안과 같음)</p> <p>2. ----- -----제5조부터 제10조, 제12조-----</p>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5. “도로표지”란 도로이용자가 도로시설을 쉽게 이용하고, 원하는 목적지까지 쉽게 도착할 수 있도록 도로의 방향·노선·시설물 및 도로명의 정보를 안내하는 도로의 부속물을 말한다.

제29조제2항제2호 중 “제3조부터 제13조”를 “제5조부터 제10조, 제12조”로 한다.

제44조 중 “공공하수도시설운영·관리 업무지침”을 “「공공하수도시설운영·관리 업무지침」”으로 한다.

제45조제2항 중 “배기량을”을 “농도를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3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</p> <p>1. ~ 4. (생략)</p> <p>5. <u>“도로표지”란 도로구조의 보존과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장소에 설치하는 것으로써 「도로표지규칙」 제2조에 따라 경계·이정·방향·노선 및 그 밖의 표지를 말한다.</u></p> <p>6. ~ 19. (생략)</p> <p>제29조(도로표지의 점검) ① (생략)</p> <p>② 관리자는 제1항에 따라 정기점검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.</p> <p>1. (생략)</p> <p>2. 점검사항 : 정기점검은 「도로표지규칙」 <u>제3조부터 제13조까지</u>의 사항을 점검한다.</p> <p>제44조(안전 및 유지관리계획) 하수관거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은 환경부의 <u>공공하수도시설운영·</u></p>	<p>제3조(정의) ----- -----.</p> <p>1. ~ 4. (현행과 같음)</p> <p>5. <u>“도로표지”란 도로이용자가 도로시설을 쉽게 이용하고, 원하는 목적지까지 쉽게 도착할 수 있도록 도로의 방향·노선·시설물 및 도로명의 정보를 안내하는 도로의 부속물을 말한다.</u></p> <p>6. ~ 19.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29조(도로표지의 점검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-----.</p> <p>1. (현행과 같음)</p> <p>2. ----- -----<u>제5조부터 제10조, 제12조</u> -----.</p> <p>제44조(안전 및 유지관리계획) ----- ----- ----- <u>「공공하수도시설 운영·</u></p>

관리 업무지침을 준용한다.

제45조(안전점검의 실시) ① (생략)

② 서울특별시품질시험소장(이하 “시험소장”이라 한다)은 하천복개 구조물 및 하수관거 중 차집관거의 주요 취약지점을 선정하여 월1회 이상 하수가스의 발생여부 및 배기량을 조사하여야 한다.

③·④ (생략)

관리 업무지침 -----.

제45조(안전점검의 실시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-----

농도를 -----.

③·④ (현행과 같음)